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484호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시는 2025년 8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가족 구조 및 돌봄 환경의 변화로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역할에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가족 내 돌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효(孝) 문화를 현대사회에 맞게 확산하기 위하여,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

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행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하여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돌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세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